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11월 26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제안이유

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('18.10월)됨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를 지원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7조 제13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협의 필요.

다. 기 타 : 신·구 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단,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3.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</u></p>